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공공하수도(이하 “하수도”라 한다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) 계룡시하수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, 하수도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.

제3조 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·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,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 (준용) 본 특별회계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